<노인 건강진단 사업 관련법령>

1. 노인복지법

제27조(건강진단 등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**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**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. 28.>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.

2. 노인복지법 시행령

제20조(건강진단 등)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보건복지부장관, 시

- ・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(이하 "복지실시기관"이라 한다)이 2년에 1회이상 국
- 공립병원,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3. 15.>
-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은 복지실시기관이 보건소 또는 보건·의료관 련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③복지실시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 보건·의료관련 기관·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3.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
제8조(건강진단기관) 영 제20조제1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- 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2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요양기관
- 2. 「의료급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[전문개정 2019. 7. 5.]

제9조(건강진단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"복지실시기관"이라 한다)은 영 제20조제1 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기간, 실시장소, 진단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 등을 정하여 건강진단 실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12. 30.>

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에는 매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13조 및 제6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「통계법」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에 포함된 성별 다빈도질환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6. 2.]